

사전재난영향평가(재평가) 결과 통보서

사전재난영향평가 통보번호		제 호	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	건축물 구분	[] 초고층 건축물 [] 지하연계 복합건축물	
	설치등 구분	[] 신축 [] 증축 [] 개축 [] 재축 [] 이전 [] 대수선 [] 용도변경	
	건축물 명칭	준공일	
	건축주	성 명	연 락 처
		주 소	
	건축물 현 황	면적 연면적 m², 건축면적 m²	용 도
		층수 지상 층, 지하 층	수용인원 명
		지하역사 명칭	
		지하도상가 명칭	
사전재난영향평가 통보일 (재평가 결과 통보 시 기재)		0000. 00. 00. ※ 사전재난영향평가 최초 통보일 기재	
평가(재평가) 결과		[] 적합 [] 부적합(보완)	
부적합 사유 및 보완사항			
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제3항(제6조제4항)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(제5조의2제2항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(제1조의4제2항)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 등의 사전재난영향평가(재평가) 결과를 통보합니다. 년 월 일 시·도지사 직인			
유의사항	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제4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·도지사에게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		